

2023년 1차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알아야 할 반부패제도 이해

강사 :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강사소개



'군대 내 부재자 투표' 이지문 님

이지문 중위는 ROTC 29기로 9사단 백마부대에서 중위로 복무하던 중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대 내 부재자투표에 당시 여당 후보를 찍으라고 상관이 병사들에게 요구하고 공개투표행위가 있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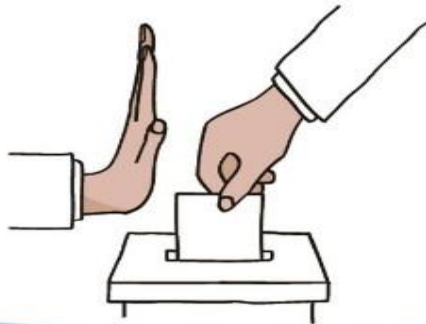


1

기자회견 직후 근무지 이탈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가 이통법으로 파면됐으나 3년간의 법정 다름 끝에 파면은 취소됐고 중위로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2



3

그의 폭로를 계기로 군대 내에서 실시한 부재자투표는 영외투표로 개선되어 같은 해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되어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는 데 일조하였다.

4



이 사건은 영화 <변호인>에서 양심선언하는 윤 중위와 웹툰 <송곳>에서 생도시절 부당한 여당 지지 정신교육에 반대하는 주인공 장연의 모델이 되었다.

강사소개



이름 이지문

소속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학력 연세대 정치학박사, 고려대 행정학석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 정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저서 보건복지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청렴시민감사관 (현)

-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
-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 전문위원 등
- 알기 쉬운 청탁금지법 강의
- 내부고발, 그 의로운 도전 (3인 공저)
-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등



'반부패의 상징'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경향신문. 2017.6.18)

경향신문
www.kyngnews.com

강의 흐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부패 및 공익신고제도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은?

연도	CPI 점수	순위	조사국가수
2018	57	45	180
2019	59	39	180
2020	61	33	180
2021	62	32	180
2022	63	31	180

2023년 1월 발표된 2022년도 결과는 역대 최고...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은? (출처 :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

[표 3] OECD 국가 부패인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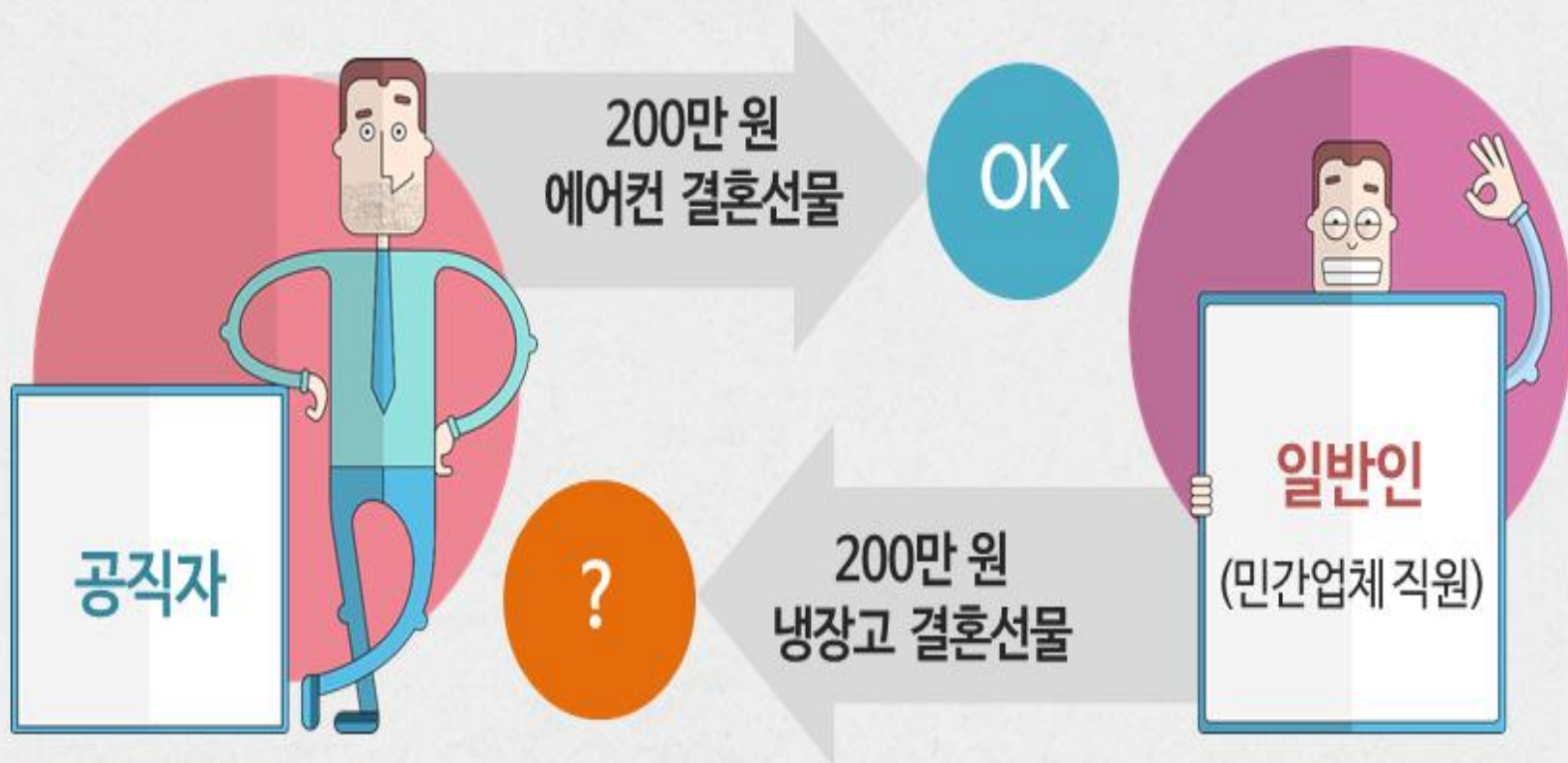
전체 순위	OECD 순위	국가	2021 CPI	전체 순위	OECD 순위	국가	2021 CPI
1	1	덴마크	90	24	20	미국	69
2	2	뉴질랜드	87	27	21	칠레	67
		핀란드	87	31	22	대한민국	63
4	4	노르웨이	84			이스라엘	63
5	5	스웨덴	83	33	24	포르투갈	62
7	6	스위스	82			리투아니아	62
8	7	네덜란드	80	35	26	스페인	60
9	8	독일	79	39	27	라트비아	59
10	9	룩셈부르크	77	41	28	슬로베이나	56
		아일랜드	77			이탈리아	56
13	11	호주	75			체코	56
14	12	캐나다	74	45	31	폴란드	55
		아이스랜드	74	48	32	코스타리카	54
		에스토니아	74	49	33	슬로바키아	53
18	15	영국	73	51	34	그리스	52
		벨기에	73	77	35	헝가리	42
		일본	73	91	36	콜롬비아	39

참고로 일본은 18위(73점). 한국 31위(63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직무관련 없는 친구 사이

직무관련 없는 절친 사이



금품등 수수 핵심

1

직무관련 있음

동일인 1회 100만 원 초과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2

직무관련 없음

동일인 1회 100만 원 초과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직무관련 있음

동일인 1회 100만 원 이하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과태료
(2배에서 5배)

4

직무관련 없음

동일인 1회 100만 원 이하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

무방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음

공직자는 금품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영상 (닥터 차정숙)



금품등 수수 금지 개념

공직자등이 일반인에게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적용대상 아님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에게

일반인이 공직자등에게

적용대상

* 공직자

- 공무원(선출직 포함)
- 공기업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학교 교직원 (사립 포함, 유치원부터), 사학재단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

”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금품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등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관련 판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
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임(대구지법 2017과2 결정)

금품등

-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2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 4 *성매매, 장학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등도 포함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여행을 위해
직무관련업체를 통해 전망 좋은 콘도 예약한 경우,
콘도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편의 제공 금품등 수수 해당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기준 연간 3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친족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률상 배우자)



연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친족, 연인 등이라 하더라도 대가성 있어
뇌물성 있다면 허용하지 않음

예외사유 (2)

”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움 처해있을 때 (본인 뿐만 아니라 생계 같이하는 가족 포함)
장기간 친분관계 등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행동강령따라 기관에 신고**)

”

공직자도 속해 있는 각종 모임 (동호회, 동창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제공받는 경우

”

사적 거래 (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받는 금품 등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예외사유 (3)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받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그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예시) 기부금품법, 도서관법, 정치자금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결핵예방법, 장학재단법, 식품기부법, 방송법 등



공직자등이 수수한 금품등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있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 성립 불가

직무관련있더라도.....

직무관련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이 있으면

		기존	변경
	음식물	3만 원	3만 원
	선물	5만 원	5만 원 농수산물, 가공품 *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5만 원 화환, 조화 10만 원

현금은
선물 불인정

명절
전후
20만원

*농수산물, 가공품(예시)

농수
산물

- 갈치, 대하, 간고등어, 굴비, 옥돔, 멸치, 건미역, 마른 김 등
 - 한우, 돼지고기, 오리·닭고기, 사골 등
 - 과일, 꽃감, 수삼, 녹차, 꿀, 화환 등
- 단순 염장·건조, 절단·포장 포함

농수산
가공품

- 조미김, 어묵, 생선통조림,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요리 등
 - 고춧가루, 곡물·버섯 분말 등
 - 참기름, 볶음고추장, 과일잼, 흑마늘, 홍삼 등
- 원료 50%초과



5만원 이하 선물이니 가능?

5만원 이하 선물이니 가능?



출처 : tvN 부암동 복수자들 제7회



생선가게를 하는 학부모가 장을 보러 온
교장선생님께 2만 5천 원 생선을 드리면?

직무관련 있더라도 가액 범위 이하 선물(일반 선물 5만 원, 농수축산물 10만 원 이하) 가능하니
2만 5천 원 생선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

만약 드리면 위반. 왜 위반일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3/5/5 범위라 하더라도

”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음

※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예시)



-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학생이 담임교사(학과목교사)에 제공하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
- 학부모가 담임교사(학과목교사)에 제공하는 경조사비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

제공자	수수자	금품유형	제공액	과태료
사유지 매수 상담 및 매수 요청 민원인	민원상담 공직유관단체 직원	딸기 2상자	3.4만 원	2배 (6.8만 원)
고소인	사건담당 경찰관	떡 1상자	4.5만 원	2배 (9만 원)
급여 신청자	급여처리 담당 공직유관단체 직원	화장품(로션,스킨) (제출서류에 동봉)	1.3만 원	3배 (3.9만 원)
협력업체 직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식사	2.3만 원	3배 (7만 원)
조사대상 사업장	사업종류 조사담당 공직유관단체 직원	음료	3.5만 원	약3배 (10만 원)
학부모	중학교 교사	선물(농수산물)	9만 원	3배 (27만 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산업재해로 신청한 요양급여가 승인되자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업무 담당 직원(B)에게 소포로 식혜 음료 한 박스(9천7백 원 상당) 발송한 40대 남성(A)이 음료수 값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



만약 A가 상기 업무로 B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공하지 않았을 것
(직무상의 행위과정에서 이루어진 선처나 호의에 대한 사례로서 제공되는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과거 계약관계에 있던 화력발전 사업소에 음료 두 박스(2만7천 원 상당)를
놓고 간 정비업체 직원 A에게 과태료 8만 원 처분 내림

정비업체 직원 A는 화력발전 사업소 사무실에 업무협의차 방문하면서 해당 부서에
음료 두 박스를 제공했지만 방문 당시 계약관계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차원에서 5만 원 이하 선물 주장



법원에서는 다른 사업소들하고도 계약관계가 얽혀 있으며
계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음료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

Question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 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 배차를 내어 교통편의 제공하는 경우는?

Answer

교통편의 제공 경우

대체교통수단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본 사안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음

유가증권 경우



기 존

변 경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100만 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하여 배우자의 금품수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금품수수

동일인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사를 밝히도록 하지 않은 공직자등	동일인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를 밝히도록 하지 않은 공직자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재대상 해당,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제재 대상 아님

처벌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등 본인

배우자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아니지만 알선수재 등으로 제재대상될 수 있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무관련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지체없이 신고



제공자에
지체없이 반환
혹은
거부의사 표시

공직자등은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선물을 바로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음**



영상)





부정청탁, 어린이들조차도 거절하기가...

유치원생조차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청렴 대한민국>

“
짧은 시간이라도 유대감을 형성하면 같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탁을 들어주고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가 작동한다

”
(곽금주 /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부정청탁 적용

공직자등이 일반인에게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부정청탁 미적용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에게

일반인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적용

공직자가 직무관련있는 일반인에게 예약편의 등을 요구
했다면 그 자체가 금품등 수수 위반이 됨
(실제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요구, 약속도 금품수수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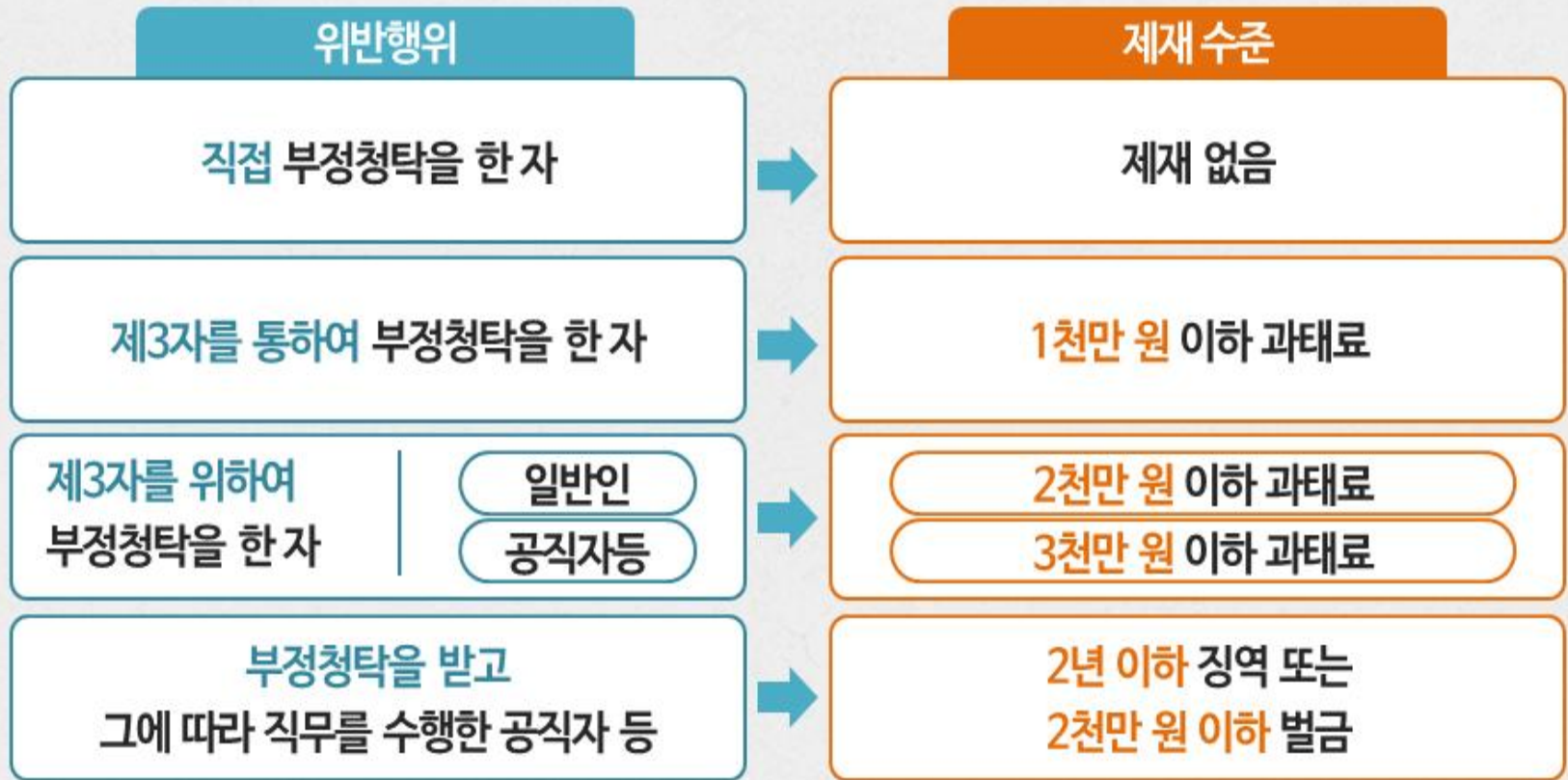
부정청탁 개념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음 14가지 대상 직무에 관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인가·허가· 면허 등 처리	행정처분· 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공공기관 의사 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입찰·경매 등에 관한직무상 비밀누설	계약당사자 선정·탈락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투자 등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학교입학· 성적 등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공공기관 실시하 는 평가· 판정 관련	행정지도· 단속·감사· 조사 관련	수사·재판·심판· 결정·조정· 중재 등 관련

법률 개정 통해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직무도
부정청탁 대상 업무 포함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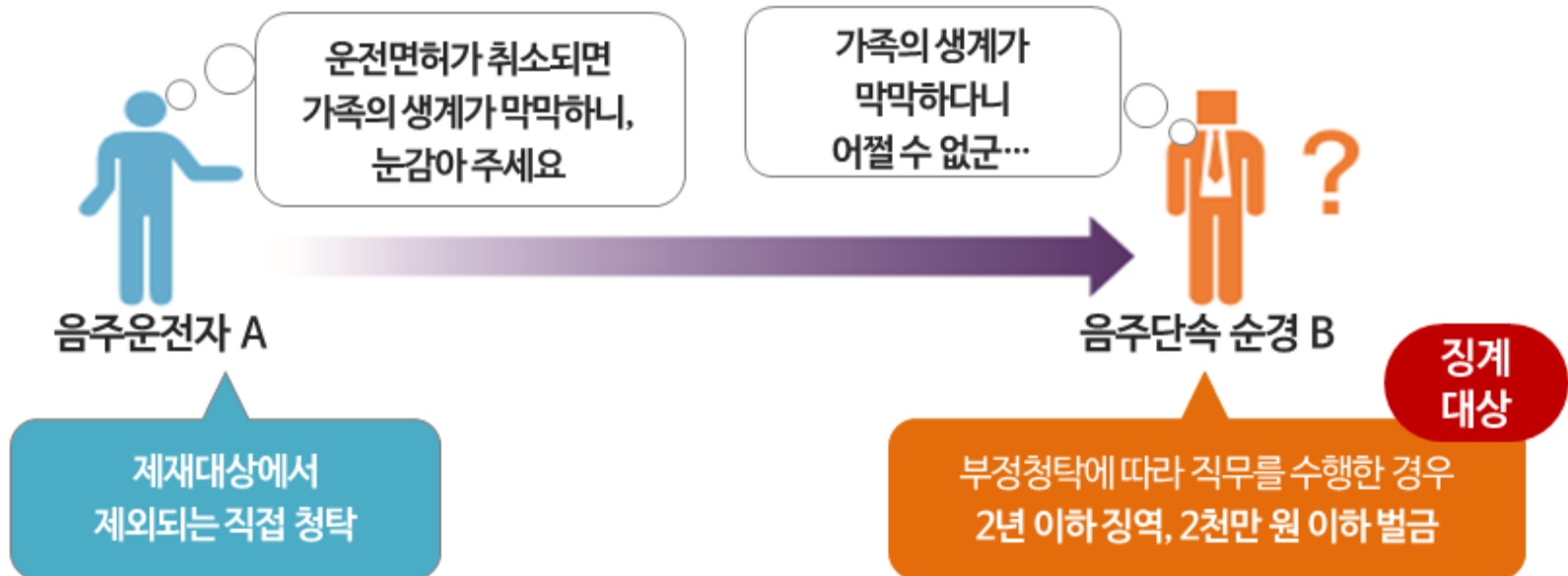


- 일반인 경우 직접 부정청탁 시 이 법에 따른 제재 없으나 공직자 경우 징계 병행
- 부정청탁 과정에서 금품등 주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재대상

사례 통해 부정청탁시 제재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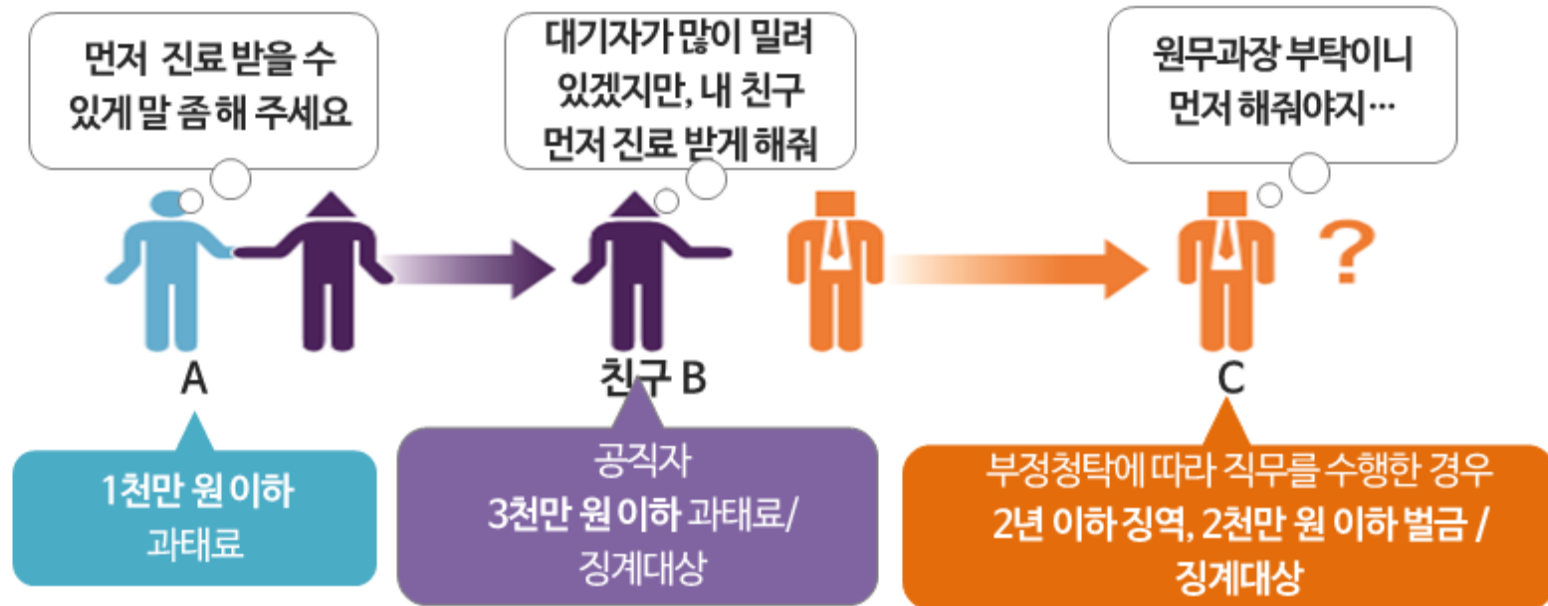
경찰 B는 A의 음주 운전 단속

최근 10년 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있는 A는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가족이 생계유지를 할 수 없으니 적발 사실을 눈 감아 달라고 부탁했고 B가 묵인한 경우



사례 통해 부정청탁시 제재 이해

A는 00국립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신청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서 해당 병원 원무과장인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청탁, 원무과장 B는 진료실 간호사 C에게 연락해 접수순서 변경하여 A가 먼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부정청탁 예외사유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 따라 요구하는 행위는 예외
- 2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학회 협회 등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 4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 5 진행상황 문의 경우
-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업무행위, 단순한 선처 및 편의의 부탁 등)

위반행위 목격시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
으로 하고 허위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위해 증거 제출 필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 경우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

신고자 보호보상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다음 경우 보호 및
보상 제외

-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 특혜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부정청탁 예외사유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 따라 요구하는 행위는 예외
- 2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학회 협회 등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 4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 5 진행상황 문의 경우
-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업무행위, 단순한 선처 및 편의의 부탁 등)

부패 및 공익신고

왜 신고를 주저할까?

인간적 차원에서 신고하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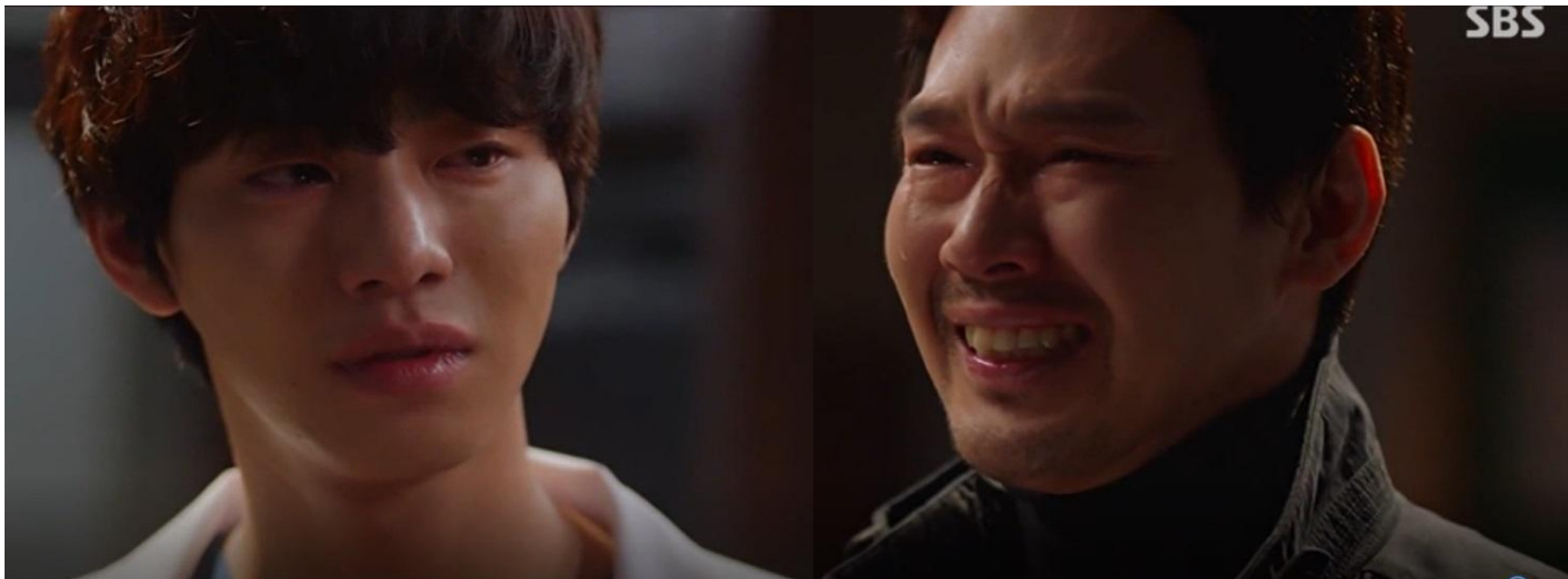
내 일도 아닌데 굳이 나설 필요가.....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하기에는....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 2, 미생 (영상)



의리와 공익 사이



출처 :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
제12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내부신고한
후배 의사에게 **“한 번만 봐주지. 쫌”**이라고 말하는 장면

굳이 신고할 필요 있었어?



출처 : tvN
드라마
<미생>



영업 3팀이 한 일은 단지 팀 차원의 태만한 사람을 혼내준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굶아가는 환부를 도려낸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팀은**
내부고발로 인한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었다.
왜 조용히 처리하지 못했느냐, 동료를 버리고 이익을
취했느냐, 사직서를 낸 상무님과 전출된 사람들에 대한
독점력이 회사 전사만을 타고 전파됐다

정과 의리 문화에서 배신으로 간주하는...

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보니
설령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그냥 지나쳐야지
들추어내어 신고해서
동고동락한 상급자나 동료가 처벌받고
직장을 잃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가 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

오히려 배신자, 배반자로 몰리기도

법적(제도적) 강화와 함께 인식변화도 중요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한병태가 엄석대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담임선생님에게 그의 비리를 폭로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리를 고발했던 병태는 담임선생님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음해하는 고자질쟁이로 몰리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된다.

문학교과서 속에 있는 논술에서

몇 년 전 초등학교에서 왕따 성행하여 자살 번질 때,
어린이날 대통령 기념사 구절중에
“우린 어린이들이 왕따에 대해 선생님께, 부모님께 말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세다”

내 일도 아닌데...

- 누군가 자꾸 배의 부속품을 몰래 빼내어 팔아 배가 침몰할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만일 그 배 안에 당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 모두 배와 함께 물 속에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경우 아마 선장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부속품 도둑을 잡도록 할 것

공익신고가 바로 이런 것임.

'배'는 우리 사회 공동체고, '부속품 도둑'은 부정부패 자행하는 자,
이를 신고하는 '당신'은 바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양심적인 신고자'임

나나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적십자사 직원들, 혈액관리 부실 내부고발

신고 이전 헌혈된 혈액 중 감염된 혈액이 유통되어 에이즈, 간염 등 감염 피해 발생

만약 신고 없었다면 수혈로 인해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도

비치용 소화기, 단가 낮추기 위해 값싼 분말 사용으로

오히려 화재 시 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신고

신고 없었다면 유사시 더 큰 화재에 노출될 수도

내가 타는 자동차 안전 문제가 있다면,

내가 먹는 식품에 인체에 유해한 색소가 첨가되고 있다면,

내가 피는 담배에 유해한 물질이 첨가되고 있다면...

적십자사 사례 (영상)



양심에 안심을 더하는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제도

2002년 1월 25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 시행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011년 9월 30일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침해)
신고자 보호 가능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부패행위 개념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 허위작성 및 공금횡령 등)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 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기관 납품 시 원가조작하여 부당이득 취하는 방위산업체, 복지시설 운영자가 소요경비 과다계상하여 보조금 부당청구 등)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금품 요구하여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 이익 줄 것 제안했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패행위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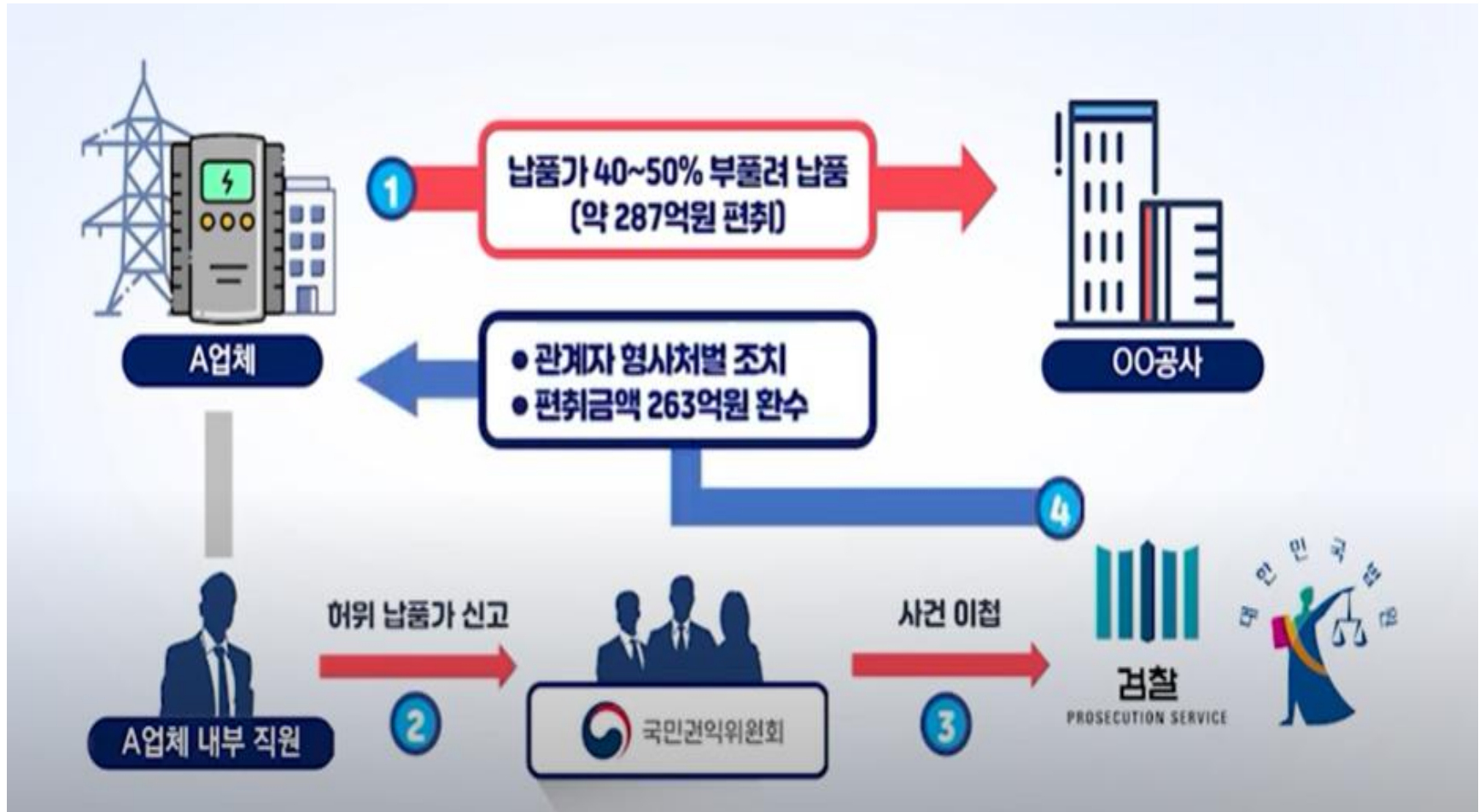
부패신고 개념

99

부패행위를 (정해진)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위반행위를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도 법적 보호 준용

부패신고 사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자 보호보상제도
콘텐츠

공익침해행위 개념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자 보호보상제도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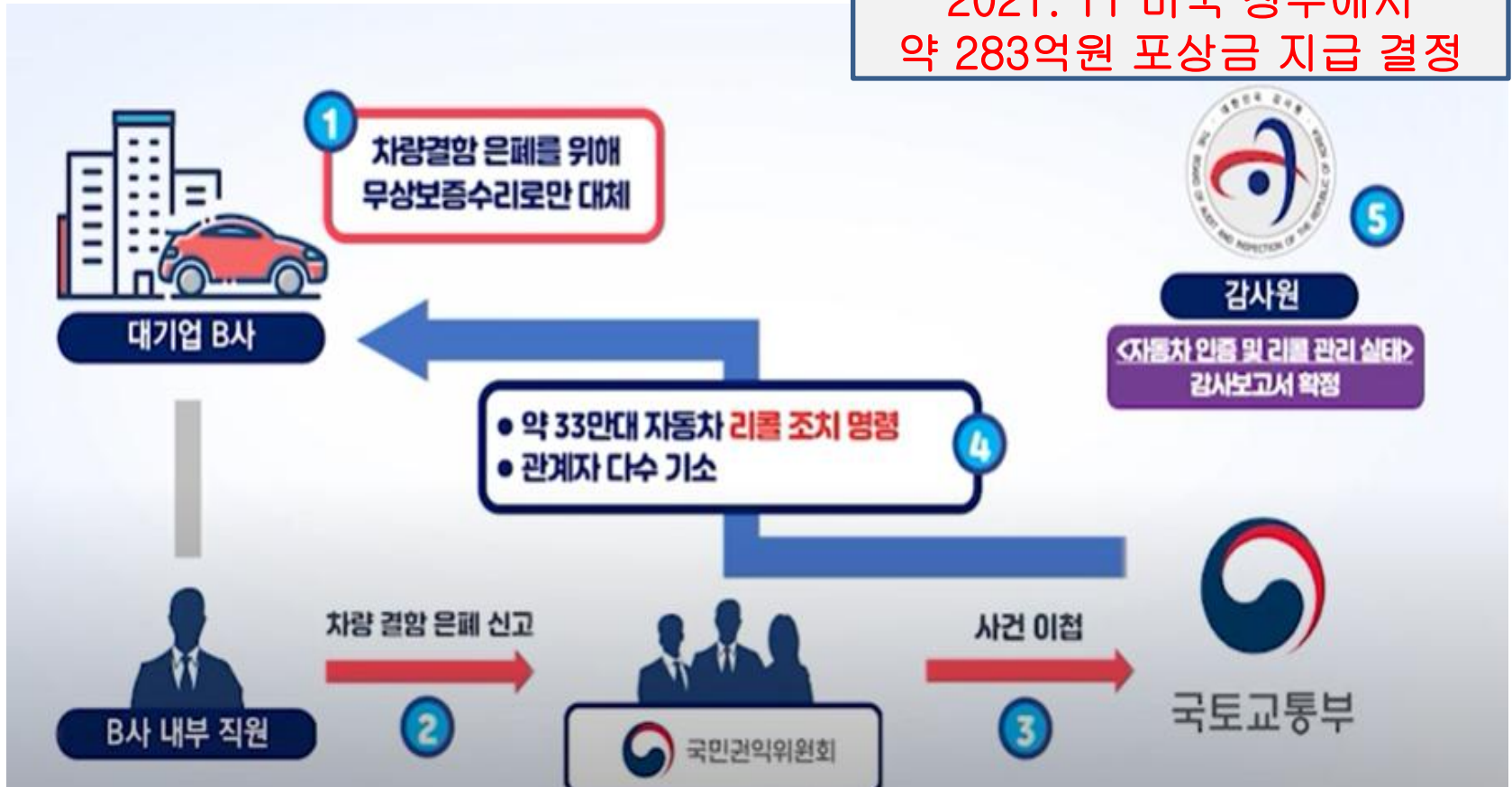
공익신고 개념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자 보호보상제도
콘텐츠

공익신고 사례

미국에도 신고,
2021. 11 미국 정부에서
약 283억원 포상금 지급 결정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콘텐츠

신고 주체 및 신고기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자 보호보상제도 콘텐츠

신고 방법

기명(실명)의 문서

-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첨부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FAX(044-200-7972)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398(상담만 가능)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 내용
- 신고의 취지와 내용
- 신분공개 동의 여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자 보호보상제도 콘텐츠

비실명대리신고 (권익위 부패신고 공익신고시에만)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공익신고자

변호사 선임

변호사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봉인 제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자 보호보상제도
콘텐츠

신고자 보호제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콘텐츠

협조자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5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



신고 협조자란?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수사·조사에 조력한 자

협조자에 대해서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적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콘텐츠

신고자 보상/포상/구조금 제도

“공익 증진 또는 국가수입 증대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 지급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자 보호보상제도
콘텐츠

블라인드 뒤에 있는 할머니를 조심하라

영국의 속담



“블라인드 뒤에 있는 할머니를 조심하라”



공동체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바로 신고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언제든지 할머니가 나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음
예방

두 가지 효과
하나는 **‘적발’**,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또 하나는 ‘적발’ 되다 보니까 아예 잘못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예방’**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목적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국민신뢰 확보

시기

법률 공포('21. 5. 18.) | '22. 5. 19. 시행

내용

제1조~제4조 | 1. 총칙

법 적용 대상 및 용어의 정의

제5조~제16조 |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5개 신고·제출 의무 및 5개 제한·금지행위

제17조~제25조 | 3.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및 교육홍보 등

제26조~제28조 | 4. 징계 및 벌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이해충돌이란?

제2조제4호 “이해충돌”이란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이해충돌



공공기관 및 공직자 개념

적용대상 |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제2조제1호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사립학교는 적용 대상이
아님

제2조제2호 “공직자”란...

공직자



국가·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 학교장과 교직원



계약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등 모두
적용대상

제16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등

민간기관 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 (제16조 제1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법인/단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법인/단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7조)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21조)
- 부당이익의 환수 등(제22조제1항·제3항)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25조제1항)

법 위반시 공직자 위반 수준에 따라 제재

제2조제5호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예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예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예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예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법령: 조례·규칙 포함 /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 포함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신고 · 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 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영상) 5개 신고/제출의무



국민권위원회
청렴연수원

2022년 5월 19일부터 적용된 이해충돌 방지법!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예시)

사적이해관계자 (제2조제6호)

가목

✓ 공직자 자신

✓ 공직자 **가족** (「민법」 제779조)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예:사위, 며느리)
-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예:장인, 장모, 시부, 시모)
-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예 시

공직자 본인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토지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공직자가
소유한 토지가 공직자가 담당하는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된 경우



형제자매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주택 증축 허가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제2조제6호)

나목

다목

- ✓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 임원 · 대표자 · 관리자 · 사외이사인 법인 · 단체
 - 대리, 고문 · 자문을 제공하는 개인 · 법인 · 단체

예시

공직자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이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특허업무를 수행중인 공직자에게
공직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특허 신청을 한 경우



특허 업무 수행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공직자 가족이 고문인 법인이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민원부서 과장과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이 고문(자문)으로
재직중인 로펌이 민원 신청을 한 경우



민원부서 과장



공직자의 장인이
고문으로 있는 로펌

사적이해관계자 (제2조제6호)

라목

마목

- ✓ **공직자가 임용전 2년 이내에**
-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
 - 대리하거나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 · 법인 · 단체

예시

A로펌이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1년 전까지 A로펌에서 근무하던 변호사가 공직에
채용되어 세무조사를 수행하던 중 **본인이 재직했던
A로펌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게 된 경우**



B회사가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B회사의 법률 관련 고문을 하던 변호사가
경찰수사관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던중
B회사의 대표를 수사하게 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제2조제6호)

바목

-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예시

C단체가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민간협력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 공모사업에
해당 업무 담당자의 누나가 일정비율(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예정)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C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주식, 지분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100
분의 50
이상

사적이해관계자 (제2조제6호)

사목

-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전 2년 이내에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예시)

- ① 퇴직한 공직자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과
- ② 퇴직한 공직자가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

예시

퇴직선배가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구청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다 1년 전에 퇴직한
선배 공직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해당 공직자가 위생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년 전 퇴직 후 식당운영하는 선배 공직자



위생 단속업무



후배 공직자

법령/기준
(사규 등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
하였던
실/국/과
(준하는
부서 포함)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최근 2년 간 1회에 100만원 초과하는 금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친족 및 금융회사 제외)
- 최근 2년 간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친족 및 금융회사 제외)
- 그 밖에 기관장이 업무 특성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1항

2항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소관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공직자



직무관련자

16개 유형의 직무 수행

동시에 사적 이해관계자일 경우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 발생

신고·신청 방법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신고·신청 대상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 신고대상 16가지 직무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1항

2항

직무관련자 등은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가능



공직자

16개 유형의 직무 수행

사적 이해관계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가능

신고 · 신청 방법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신고 · 신청 대상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신고, 회피·기피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함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 인정

1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 · 점검토록 조치



조치 이후,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처리 결과 통보**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위반자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무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 ·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환수조치 (제22조)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조치



예 시

소속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해당 지구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의무 발생



OO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A기관 소속 공직자가
해당 지구내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 신고 필요

■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공직자(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등 포함)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 /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 신고**

신고내용 |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내역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대한 기관장 조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함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 인정

- 1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토록 조치

조치 이후, 해당 공직자에게 **처리 결과 통보**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위반자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신고 및 고발 (제7조제4항)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함

환수조치 (제22조)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조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예시)

예시



신고사건 담당 공직자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사건 신고자(직무관련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공직자는 신고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 등)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



신고대상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거래 등 사적거래를 한다는 것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대상자 | 제9조제1항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신고대상 거래행위 및 위반시 조치사항

신고대상

금전 및 유가증권 등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금융회사등이나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 거래하는 행위 제외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공개모집 분양, 공매 · 경매 · 입찰에
의한 거래 행위는 제외

계약 체결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공매 · 경매 · 입찰을 통한 계약,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등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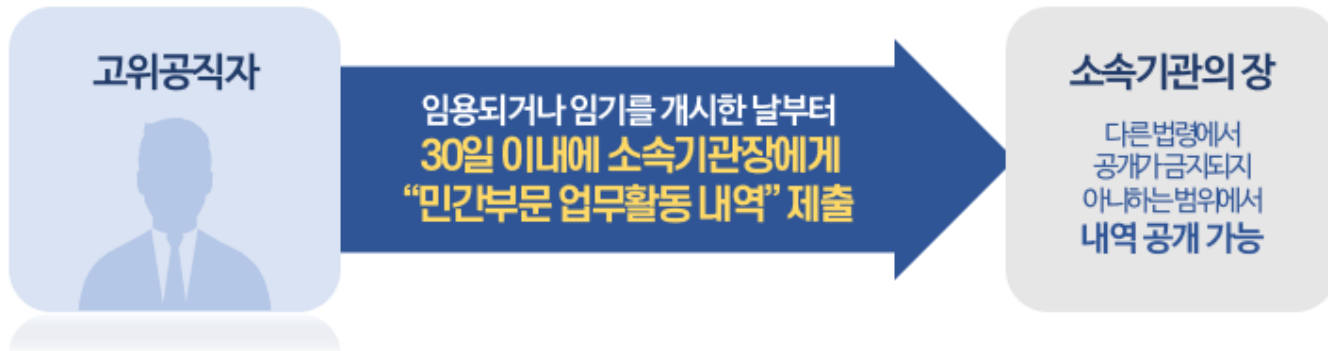
위반자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 ·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는 임용(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재 사항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고위공직자 범위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고위공직자 범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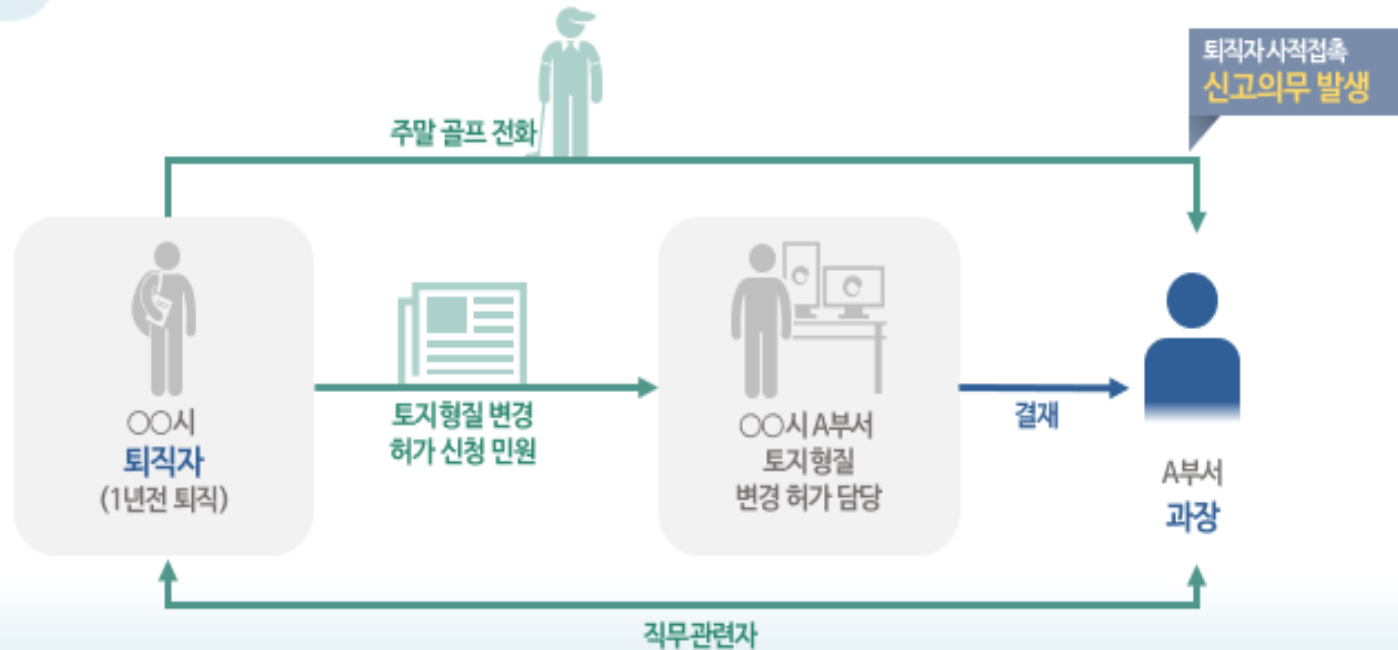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함.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2. 대통령경호처 차장
3.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4. 제3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1.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예시)

예 시



〇〇시에서 근무하다 1년 전 퇴직한 자가
같은 시 A부서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한 후,
A부서 과장에게 전화하여 주말에 골프나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함
→ 〇〇시 A부서 과장은 퇴직공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접촉사실을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단, 사적 접촉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다른 의무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예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함

위반시 조치사항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 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 · 취소 조치

■ (영상) 5개 제한/금지



직무수행 중, 공직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예시)

예시



- ✓ A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A공공기관의 소속직원 부탁을 받아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현금 등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 B공공기관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중인 ○○부 송무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B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

(단,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것이 사적인 외부활동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아야 함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공직자가 직무상 습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강의료를 수수하는 등의 사익 추구행위 금지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소속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서 그 상대방인 제3자를 위해 조언·자문 등을 할 경우 소속 공공기관의 이익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공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
(단,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란 공직자 자신의 포괄적인 직무범위와 관련 있는 모든 다른 직위를 의미함. 예컨대,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 공공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직무상 관계가 있다면, 그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는 퇴직자 단체에서 어떠한 직위도 가질 수 없음



위반시 조치 및 제재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행위가 제한된 외부활동으로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족채용 제한 (예시)

예 시



- ✓ 중앙행정기관 ○○부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때에 장관의 자녀를 공개경쟁채용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의하지 않고 채용하는 행위
- ✓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채용업무를 담당(인사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및 인사업무 담당직원)하는 인사과장의 동생을 공개경쟁채용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의하지 않고 채용하는 행위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공공기관과 자회사
포함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채용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허용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가족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위반시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상세
알아보기

가족 채용 제한

시행령 제13조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익계약 체결 제한 (예시)

예 시



- ✓ ○○부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 시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 ○○부는 법령상 계약업무 담당자(계약담당, 계약담당의 과장) 및 사실상 계약업무담당자(계약내용 관련 부서)의 가족과도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공공기관과 자회사
포함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 등 및 그 가족 등과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

수익계약 체결을 제한받는 공직자 등은 수익계약 체결을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물품·용역·공사 등
수익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의 범위



- 1 소속 고위공직자
-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등
- 6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7 ①부터 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 8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9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위반시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위반시 조치사항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직무상 비밀등 이용 금지 (예시)

예시



- ✓ 공직자 A는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B로부터 내부 비밀인 개발관련 자료를 획득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 매입
- ✓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신도시 개발 계획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농지매입 자금을 대출받아 해당 신도시 개발구역 내 농지 매입

직무상 비밀등 이용 금지

1항

2항

3항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퇴직자 포함)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미공개정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적용 범위

- 현재 소속 공직자
-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퇴직자)를 포함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예시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임직원이 아니게 된 후 10년까지
- ✓ 「자본시장법」
임직원이 아니게 된 후 1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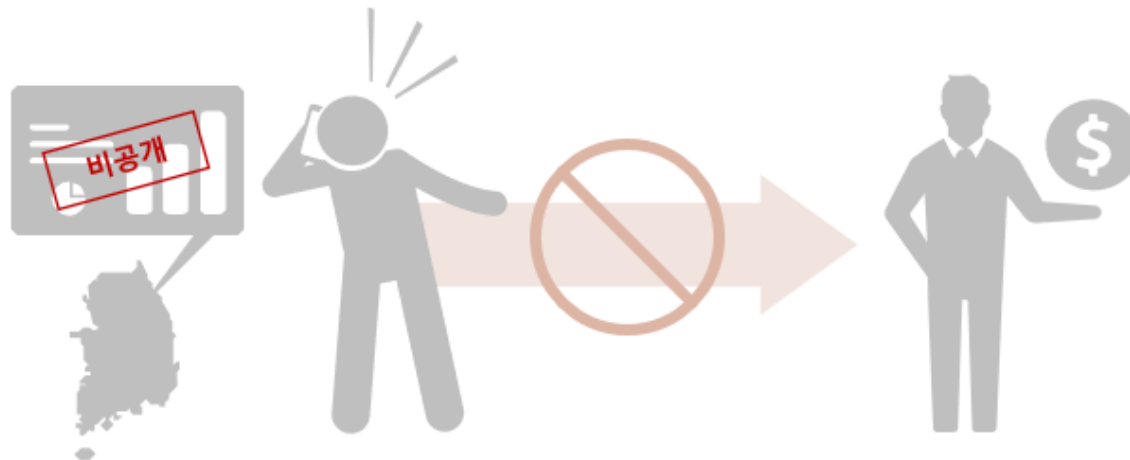
직무상 비밀등 이용 금지

1항

2항

3항

공직자가 아닌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행위 금지





직무상 비밀등 이용 금지

1항

2항

3항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사적이익의 범위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위반시 조치 및 제재 (제21조, 제26조, 제27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 ·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직자 및 제3자는 위반 수준에 따라 제재

구분		금지행위 위반내용	처벌
공직자	재산상 이익 취득	제1항 위반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제3자	재산상 이익 취득	제2항 위반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공직자	사적 이용	제3항 위반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몰수·추징 : 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 하면?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누구든지 부정청구등 행위를 신고하면?

안전하게
신고자 보호



세상을 바꾸는 용기
신고자 보상·포상



20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

부칙 <법률 제16323호, 2019.4.16.>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배제

0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0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03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04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범위

공공기관
(법 제2조제1호)



금품등
(법 제2조제3호)

- 금전
- 채권
- 물품
- 상품권,
이용권 등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법 제2조 제5호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2조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고용촉진지원금, 공익직접지불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훈급여금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는 금품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어린이집 보조금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자체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유가보조금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인상,
이에 따라 증가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농업직불금)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7조)



부정청구등

법 제2조 제6호

허위 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 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Q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어떤 **부정청구등 유형**에 해당하나요?



허위청구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실제 근로한 경우에만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허위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부정이익
환수
+이자포함

제재부가금
부과
x 최대 5배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법익실효성
확보장치

환수

지급 중단(법 제7조)

확실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결정 취소

환수하는 경우 부정이익 + 이자 환수

불확실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환수금액 산정

환수금액

부정이익 가액

허위청구

제공받은 금액

과다청구

(과다하게 청구받은 금액) -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

목적외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

오지급

잘못 지급된 금액

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

이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20.1.-'20.2. 연 2.1%
'20.3.-'21.2. 연 1.8%

연 1.2%
'21.3. 현재

이자 계산기간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 ~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개월 수

제재부가금 부과

제재부가금 : 부정이익등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법 제9조 부정이익(+이자)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법 시행령 제5조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x5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x3

목적외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x2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감면할 수 있음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과실
50%

행정청의 과실
100%



법 제16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

②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 3천만원 이상

심의위원회 심의

구성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위원장 행정청의 부기관장

- 위원
- 고위공직자 3명 이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5급이상 공무원)
 - 민간전문가 5명 이내

임기

3년
1차례 연임 가능

소명절차

사전 통지 및 이의신청

* 5일 이상의 기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명단공표

기간

1년간
미납시 계속 공표

방법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매년 3월 31일까지

공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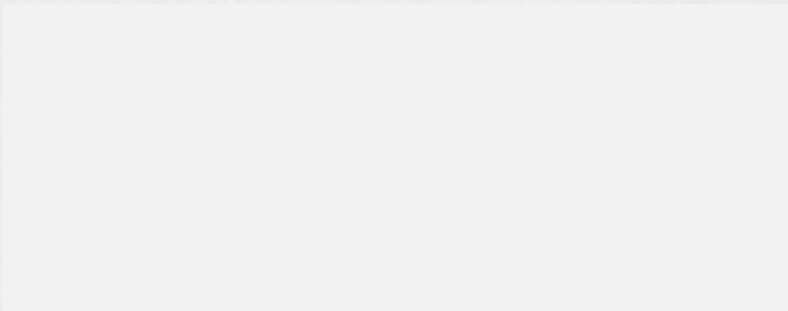
성명, 상호, 나이 및 주소
기관·법인·단체는 대표자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 문

010-3679-3169

allgreenkorea@hanmail.net



www.청렴교육.한국